

---

# 2020년도 제1차 이사회

---

2020. 3. 5 (목)

# 이사회 안건

## □ 심의안건

- (제1호) 2019년도 결산(안)
- (제2호) 취업규정 개정(안)
- (제3호) 여비규정 개정(안)
- (제4호)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 (제5호) 정기 주주총회 소집(안)

의안번호	제 1 호
년 월 일	2020년 3월 5일

의  
결  
사  
항

---

## 2019년도 결산 (안)

---

제안부서	경영지원팀
제출연월일	2020년 3월 5일

## 1. 의결주문

- 2019년도 결산(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사유

- 정관 제28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의거, 2019년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정기주주총회에 제출코자 부의 함.

## 3. 주요내용

### < 요약 재무상태표 >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기	전기
<b>I. 자산</b>	<b>3,273</b>	<b>3,296</b>
1. 유동자산	1,754	1,711
(1)당좌자산	1,754	1,711
2. 비유동자산	1,519	1,585
(1) 투자자산	762	819
(2) 유형자산	710	730
(3) 무형자산	47	36
<b>자산의 합계</b>	<b>3,273</b>	<b>3,296</b>
<b>II. 부채</b>	<b>377</b>	<b>453</b>
1. 유동부채	228	280
2. 비유동부채	149	173
<b>III. 자본</b>	<b>2,896</b>	<b>2,843</b>
1. 자본금	1,925	1,925
2. 잉여금	971	918
<b>부채 및 자본의 합계</b>	<b>3,273</b>	<b>3,296</b>

**<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기	전기
<b>I. 매출액</b>	<b>2,319</b>	<b>4,704</b>
II. 매출원가	1,312	3,637
III. 매출총이익	1,007	1,067
IV. 일반관리비	1,019	1,036
<b>V. 영업이익</b>	<b>-12</b>	<b>31</b>
VI. 영업외 수익	74	23
VII. 법인세 등	9	4
<b>VIII. 당기순이익</b>	<b>53</b>	<b>50</b>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기	전기
<b>I. 미처분이익잉여금</b>	<b>971</b>	<b>918</b>
1. 전기이월 미처분이익 잉여금	918	868
2. 당기순이익	53	50
II. 임의적립금등 이입액	0	0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0	0
VI. 차기 이월 미처분이익 잉여금	<b>971</b>	<b>918</b>

**4. 참고사항**

- 근거규정 : 정관 제28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 별첨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의안번호	제 2 호
년 월 일	2020년 3월 5일

의  
결  
사  
항

---

## 취업규정 개정 (안)

---

제안부서	경영지원팀
제출연월일	2020년 3월 5일

## 1. 의결주문

- 취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사유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 '19.7.16)에 따라 현장 안착 추진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정 개정 사항을 수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원칙, 예방교육, 피해자보호 조치 등의 규정을 마련코자 부의 함

## 3. 주요내용

### □ 직장내 괴롭힘 행위 금지원칙

-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근거하여, 금지의 원칙 명시 (제117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행위 발생시의 조치

- 고용노동부 표준안 적용, 1년 1회 이상 예방교육실시, 교육내용 등을 포함하여 기준 마련 (제118조)
- 발생시에 신고 및 조사에 대한 관련 규정 마련 (제119조)
-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별도 마련(징계포함) (지침 제정)

## 4. 참고사항

- 근거규정 : 정관 제28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의안번호	제 3 호
년 월 일	2020년 3월 5일

의  
결  
사  
항

---

## 여비규정 개정 (안)

---

제안부서	경영지원팀
제출연월일	2020년 3월 5일

## 1. 의결주문

- 여비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사유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의 구분 및 항목을 재정리
- 현실성이 없는 시외당일귀임출장은 폐지하고, 국내여비는 근무지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으로 구분하여 지급 기준 마련
- 직급별로 차등화된 일비를 단일화 하는 등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비규정을 개정코자 부의 함

## 3. 주요내용

- 여비의 구분 및 항목 재정리 (제2조, 제2조의1)
  - 여비의 구분을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타여비로 재정리
  - 여비의 항목을 운임, 체재비, 준비금으로 재정리
- 회사차량 이용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마련 (제5조)
  - 근무지내 출장시 회사차량 이용자에 대해 1만원을 감액 지급
-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기준 재정립 (16조)
  - 근무지내 국내출장 기준을 서울시 또는 관내 12km미만 출장으로 정의
  - 당일귀임출장 폐지, 출장시간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 지급[별표3]
  - 직급별 차등 지급하는 일비를 2만원으로 단일화
- 근무지외 국내출장 여비 기준 재정립 (16조1)
  - 부득이한 경우의 자가차량 이용 기준

## 4. 참고사항

- 근거규정 : 정관 제28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의안번호	제 4 호
년 월 일	2020년 3월 5일

의  
결  
사  
항

---

## 위임전결규정 개정 (안)

---

제안부서	경영지원팀
제출연월일	2020년 3월 5일

## 1. 의결주문

- 위임전결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사유

- 전결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표1]의 직위별 전결사항을 개정코자 부의 함

## 3. 주요내용

- 전결기준 명확화 (제2조)
  - 직위별 전결사항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전결처리 기준 명시
- 단순반복 업무에 대해 부서장 위임 등 인증업무 관련 전결사항 정리 [별표1]

## 4. 참고사항

- 근거규정 : 정관 제28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의안번호	제 5 호
년월일	2020년 3월 5일

의  
결  
사  
항

---

## 정기 주주총회 소집 (안)

---

제안부서	경영지원팀
제출년월일	2020년 3월 5일

## 1. 의결주문

- 2020년 정기 주주총회 소집(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사유

- 정관 제18조, 제36조 및 제37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의거 영업보고, 이사 선임 등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개최일자 : 2020년 3월 13일(금), 10:30 ~
- 개최장소 : SBC인증원 임원실
- 참석자 : 주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정기 주주총회 안건
  - 1호의 안 : 제25기( '19.01.01 ~ '19.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 2호의 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3호의 안 : 대표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4호의 안 : (비상임)이사 변경 승인의 건

## 4. 참고사항

- 근거규정 : 정관 제18조